제 262회 정례회 2007.7.10~7.20

# 검토보고서

-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 1. 세입예산결산
  - 2. 세출예산결산
    - 가. 공보관실 소관
    - 나. 감사관실 소관
    - 다. 자치행정국 소관
- II.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 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
  -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
- III.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 1.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I. 결산개요

# 1. 총괄

(단위:백만원)

세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게 득 	1	2 2	3	3/1	3/2	처분	(이월액)	3 - 1
합 계	1,987,261	2,101,681	2,074,347	104.4	98.7	5,370	21.964	87,086
지 방 세	458,270	566,126	540,058	117.8	95.4	5,212	20,856	81,788
취득세	182,380	216,757	211,392	115.9	97.5	427	4,938	29,012
등 록 세	161,450	194,408	193,737	120.0	99.7	241	430	32,287
면 허 세	2,420	2,449	2,344	96.9	95.7	3	102	△76
공동시설세	11,496	14,630	13,835	120.3	94.6	124	671	2,339
지역개발세	2,534	2,905	2,895	114.2	99.7	-	10	361
지방교육세	88,350	108,688	105,826	119.8	97.4	138	2,724	17,476
과년도수입	9,640	26,289	10,029	104.0	38.1	4,279	11,981	389
세외수입	261,164	267,876	266,610	102.1	99.5	158	1,108	5,446
경 상 적 세외수입	20,071	24,506	24,389	121.5	99.5	1	116	4,318
임 시 적 세외수입	241,093	243,370	242,221	100.5	9.5	157	992	1,128
지방교부세	383,614	390,937	390,937	101.9	100.0	0	0	7,323
 국고보조금	851,713	848,142	848,142	100.1	100.0	0	0	△3,571
지 방 채	32,500	28,600	28,600	88.0	100.0	0	0	△3,900

# 1-1. 세외수입 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1171	· ㅋㅂㄹ/
서	]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결손 처분	미수납액	초과세입
	9	1	201 2	3	3/1	3/2	^]让 ④	5	3 - 1
ថ្មី	나 계	261,164	267,876	266,610	102.1	99.5	158	1,108	5,446
	身 상 적 ∥외수입	20,071	24,506	24,389	121.5	99.5	1	116	4,318
3	재산임대 수 입	456	625	606	132.9	97.0	-	19	150
-	사 용 료 수 입	3,575	3,782	3,687	103.1	97.5	-	95	112
4	수 수 료 수 입	2,074	2,394	2,394	115.4	100.0	-	-	320
/	사업수입	508	572	569	112.0	99.5	-	3	61
2	장수교부금 수 입	4,613	4,641	4,641	100.6	100.0	-	-	28
	이자수입	8,845	12,492	12,492	141.2	100.0	-	-	3,647
임서	] 시 적  외수입	241,093	243,370	242,221	100.5	99.5	157	992	1,128
3	재산매각 수 입	694	708	699	100.7	98.7	-	9	5
÷	순 세 계 잉 여 금	116,996	116,996	116,996	100.0	100.0	-	-	1
	이 월 금	94,583	94,583	94,583	100.0	100.0	-	-	
	전 입 금	2,589	2,589	2,589	100.0	100.0	-	-	-
	융 자 금 원금수입	3,000	3,341	3,341	111.4	100.0	-	-	341
	부 담 금	9,238	9,239	9,238	100.0	100.0	-	1	-
	잡 수 입	13,893	14,681	14,591	105.0	99.4	1	89	698
3	지난년도 수 입	100	1,233	184	184.0	14.9	156	893	84

# 2. 결손처분

(단위 : 천원)

과 목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타
합 계	5,369,653	4,026,660	76,291	246,955	568,890	450,857
지 방 세	5,212,284	3,962,944	73,757	156,308	568,890	450,385
취 득 세	427,350	323,338	-	-	20,584	83,428
등 록 세	240,733	225,477	-	-	4,560	10,696
면 허 세	2,984	2,365	6	-	307	306
공동시설세	123,772	80,544	659	-	15,404	27,165
지역개발세	104	104	-	-	-	-
지방교육세	137,880	113,544	1,479	-	8,229	14,628
과년도수입	4,279,461	3,217,57 <mark>2</mark>	71,613	156,30 <mark>8</mark>	519,806	314,162
세외수입	157,369	63,716	2,534	90,647	-	472
도로사용료	620	620	-	-	-	-
과태료 및 범 칙 금	1,000	-	1,000	-	-	-
과년도수입	155,749	63,096	-	90,647	-	472

주) 기타는 소액으로 경매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 3. 미수납액

(단위 : 천원)

과	목	합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합	계	21,964,483	1,732,462	1,956,323	6,489,918	7,589,271	4,196,509
지 방	세	20,856,250	1,694,512	1,885,379	6,012,176	7,278,619	3,985,564
취득	세	4,937,881	301,599	294,803	1,495,439	1,849,036	997,004
등 록	세	430,068	19,328	88,831	142,310	122,465	57,134
면 허	세	102,192	10,011	16,374	32,930	17,136	25,741
공동시	설세	670,561	45,760	66,155	164,982	209,952	183,712
지역개	발세	10,305	892	1,937	3,936	887	2,653
지방교	육세	2,723,970	192,604	223,668	911,393	647,020	749,285
과년도	수입	11,981,273	1,124,318	1,193,611	3,261,186	4,432,123	1,970,035
세외수	입	1,108,233	37,950	70,944	477,742	310,652	210,945
경상적세의	기수입	116,523	6,796	5,414	46,744	27,167	30,402
공유재산	임대료	19,276	665	564	11,720	1,074	5,253
도로사성	용료	55,569	5,375	3,937	22,972	15,500	7,785
하천사성	용료	39,157	756	913	9,532	10,593	17,363
사업장생	산수입	2,520	-	-	2,520	-	-
예금이지	수입	1	-	-	-	-	1
임시적세의	리수입	991,710	31,154	65,530	430,998	283,485	180,543
국유재신	난매각	8,840	,	1	8,840	-	-
일반부명	計금	528	-	1	528	-	-
변상금		7,049	-	-	6,716	-	333
위약금		2,772	-	-	2,772	-	-
과태료및	범칙금	64,466	2,875	10,600	29,491	16,500	5,000
시도비빈	반환금	6,135	-	-	-	-	6,135
기타잡	수입	8,543	-	4,078	-	3,423	1,042
과년도~	<u></u> 수입	893,377	28,279	50,852	382,651	263,562	168,033

주) 기타는 처납처분 진행중, 납기 미도래 등

# 4. 세목별 세수구성비

(단위 : 백만원)

	2006 ર	1	2005	년	2004 է	`	7 12 12)
세 목	수납액	%	수납액	%	증감액	%	비고
합 계	2,074,347	100.0	1,750,142	100.0	1,856,975	100.0	
자주재원	806,668	38.9	700,822	40.0	651,362	35.1	
지 방 세	540,058	26.0	411,528	23.5	388,025	20.9	
취 득 세	211,392	10.2	144,062	8.2	121,016	6.5	
등 록 세	193,737	9.3	154,252	8.8	146,757	7.9	
면 허 세	2,344	0.1	2,227	0.1	2,188	0.1	
공동시설세	13,835	0.7	11,477	0.7	12,419	0.7	
지역개발세	2,895	0.1	2,610	0.1	2,918	0.2	
지방교육세	105,826	5.1	90,570	5.2	94,608	5.1	
과년도수입	10,029	0.5	6,330	0.4	8,119	0.4	
세외수입	266,610	12.9	289,294	16.5	263,337	14,2	
경 상 적 세외수입	24,389	1.2	20,929	1.2	21,308	1.2	
임 시 적 세외수입	242,221	11.7	268,365	15.3	242,029	13.0	
의존재원	1,239,079	59.7	1,038,319	59.3	1,081,946	58.3	
지방교부세	390,937	18.8	361,573	20.7	298,418	16.1	
지방양여금	-	-	-	-	123,172	6.6	
국고보조금	848,142	40.9	676,746	38.7	660,356	35.6	
지 방 채	28,600	1.4	11,000	0.6	123,667	6.6	

# 5. 전년도 결산 대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징 수	수납액	비율	(%)	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세	목	1	징 수 결정액 ②	3	3/1	3/2	결손 처분 ④	5	3-1
· 합	'06년	1,987,261	2,101,681	2,074,347	104.4	98.7	5,370	21,964	87,086
	'05년	1,663,704	1,781,167	1,750,142	105.2	98.3	5,569	25,456	86,438
계 	%	19.4	12.3	18.5	-	-	△3.6	△13.7	0.7
7]	'06년	458,270	566,126	540,058	117.8	95.4	5,212	20,856	81,788
지   방	'05년	334,540	441,126	411,529	123.0	93.3	5,471	24,126	76,989
세	%	37.0	28.3	31.2	-	-	△4.7	△13.6	6.2
세	'06년	261,164	267,876	266,610	102.1	99.5	158	1,108	5,446
외 수 입	'05년	285,988	290,722	289,294	101.2	99.5	98	1,330	3,306
입 입	%	△8.7	67.9	67.8			61.2	△16.7	64.7
지	'06년	383,614	390,937	390,937	101.9	100.0	0	0	7,323
지방교부세	'05년	355,620	361,573	361,573	101.7	100.0	0	0	5,953
세	%	7.9	8.1	8.1					
н	'06년	851,713	848,142	848,142	99.6	100.0	0	0	△3,571
보 조 -	'05년	676,256	676,746	676,746	100.1	100.0	0	0	490
금	%	25.9	25.3	25.3					
الح	'06년	32,500	28,600	28,600	88.0	100.0	0	0	△3,900
지   방   채	'05년	11,300	11,000	11,000	97.3	100.0	0	0	△300
<u>채</u>	%	87.6	160.0	160.0					

#### 2. 세입결산 분석

- 2006 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한 1조 9,87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8.0% 증가한 2조 1,017억원,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2조 744억원이며, 세입예산의 4.4%에 해당하는 871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징수결정액 2조 1,017억원의 98.7%에 해당하는 2조 774억원이 수납되었고, 0.3%에 해당하는 54억원이 불납결손처분되었으며, 1.0%해당하는 219억원이 미수납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결손 처분	이월액	초과세입
1 4	1	2	3	3/1	3/2	처분	7 2 7	3 - 1
2006년	19,873	21,017	20,744	104.4	98.7	54	219	871
2005년	16,637	17,812	17,501	105.2	98.2	56	255	864
증감율	19.4	18.0	18.5	_	-	△3.6	△14.1	0.8

○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3%에 해당하는 5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0억 2,700 만원, 행방불명 7,600만원, 시효완성 2억 4,7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5억 6,900만원, 기타 4억 5,100만원임.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과	목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합	계	5,370	4,027	76	247	569	451
지 병	방 세	5,212	3,963	74	156	569	450
세외	수입	158	64	2	91	0	1

○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에 해당하는 219 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 불명 17억 3,200만원, 무재산 19억 5,600만원, 고질적 체납 64억 9,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중인 것이 75억 8,900만원, 기 타 41억 9,700만원임.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과	목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합	계	21	,964	-	1,732	1,956	6,490	7,589	4,197
지병	<b>}</b> 세	20	,856	-	1,694	1,885	6,012	7,279	3,986
세외	수입	1	,108	-	38	71	478	310	211

○ 초과세입은 870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징수로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미수령분이며, 국고보조금은 35억 7,10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며, 지방채는 39억원이 차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공사진도에 따라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임.

(단위:백만원)

7. 13	초과		자체수입	]		วไหไล่ไ		
구분	세 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교부세	보조금	기방채
2006년	87,086	87,234	81,788	5,446	3,752	7,323	△3,571	△3,900
2005년	86,438	80,295	76,989	3,306	6,443	5,953	490	△300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수구성비율은 자체수입 38.9%, 의존수입 59.7%, 지방채 1.4%로 의존수입 비중이 2001년도부터 증 가 추세에 있음.

# 세수구성비

(단위: 억원)

2]]	목	2005	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세	寸	수납액	%								
합	계	20,744	100.0	17,501	100.0	18,570	100.0	16,968	100.0	16,104	100.0
자체	수입	8,067	38.9	7,008	40.1	6,513	35.1	7,510	44.3	5,278	32.7
의존	수입	12,391	59.7	10,383	59.3	10,820	58.3	9,458	55.7	10,554	65.6
지 병	방 채	286	1.4	110	0.6	1,237	6.6	0	0.0	272	1.7

#### 3. 검토의견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결 정액 대비 수납율 증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 가.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관한 검토

○ 2006회계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5,400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82억 7,000만원보다 817억 8,8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17.8%의 오 차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

(단위: 백만원/%)

세 목	예산현역	객 구성비	수납액	초과 ·미달 세 입 액	2006년도 오 차 율	2005년도 오 차 율
 지 방 세	458,270	100.0	540,058	81,788	17.8	23.0
보통세	346,250	68.8	407,473	61,223	17.7	30.5
취 득 세	182,380	29.9	211,392	29,012	15.9	44.0
등 록 세	161,450	38.2	193,737	32,287	20.0	20.6
면 허 세	2,420	0.7	2,344	△76	△3.1	△1.9
목적세	102,380	29.6	122,556	20,176	19.7	5.7
공동시설세	11,496	3.6	13,835	2,339	20.3	5.4
지역개발세	2,534	0.7	2,895	361	14.2	6.8
지방교육세	88,350	25.3	105,826	17,476	19.8	7.2
과년도수입	9,640	1.6	10,029	389	4.0	21.8

○ 이는 중앙정부의 국세 추계 오차율 2.0%와 비교하여 볼때 국세규 모의 0.3%에 해당하는 우리도의 지방세 오차율 17.8%는 세수추계 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국세 세수추계 오차와의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지빙	세 (충청	성북도)	국 세 (중앙정부)			
j Ł	예산현액	수납액	초과세입	예산현액	수납액	초과세입	
2006년	4,583	5,401	818(17.8%)	1,353,336	1,380,443	27,107(2.0%)	
2005년	3,345	4,115	770(23.0%)	1,220,686	1,177,957	△42,729(3.5%)	

-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예산편성과 도 재정운용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의 범위나 세율수준의 조정, 도민의 지방세 부담 등을 예측하여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도세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파단근거임.
- 세수추계의 오차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과소세입의 경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약화 시킬 수 있고, 과다세입의 경우에는 도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 는 결과를 낳거나 필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는 바,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세목의 추계오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이와같이 세수추계 오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현행 세수추계방 식의 개선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으며, 더욱이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세수추계 모델 설정이 긴요한 실정임.

#### 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징수관리에 관한 검토

- 2006회계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5,661억 2,600만원에 대하여 불납결손액은 52억 1,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8억 5,600만원으로 이 둘을 합한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4.6%에 해당하는 260억 6,8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국내소비와 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세입증가율은 이를 충족할 정도로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이러한 과세환경은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도민의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 따라서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탈세방지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세입정책이라고 할 수있으므로
-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에 있어서 는 은 닉재산의 추적조사 실시 등 무재산 확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결 손처분을 행한 후에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추적조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 1. 공보관실 소관

O 2006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9.9%가 증가한 19억 6,700만원으로 예산액의 90.7%인 17억 8,400 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3%인 1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 유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Ó	]월액 (	С	불용액	B/A	D/A
1 1	A	В	계	명시	사고	D	D/ A	DIA
2006년	1,967	1,784	0	0	0	183	90.7	9.3
2005년	1,230	1,093	0	0	0	137	88.9	11.1
증감율	59.9	63.2				33.6	-	-

O 불용액 1억 8,300만원은 집행잔액 1억 3,100만원, 예산절감액 5,200 만원임.

#### 불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 발 생	사 업계 획 변경ㆍ취소	예산절감	기타
183	131	-	_	52	-
(100.0)	(71.6)			(28.4)	

O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목간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에 비 해 9.3%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 공보관실 >

# 예산액 대비 2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1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발 생 사 유
공보관실	주요행사조명·음향 장비 임차	13,000	13,000	100%	VIP등 주요행사 수요 미발생
и	도정소식지 발간	147,400	58,611	39%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차액과 예산절감액
u	도정소식 퍼즐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	2,400	2,400	100%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미집행
u	주부명예기자 운영보상금	3,000	1,910	63%	주부명예기자의 기사투고실적 저조
"	도정홍보뉴스 제작방송	23,000	12,317	53%	「도정홍보뉴스」영상물 제작에 자체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 외주 제작비용(작가비 등)절감

#### 2. 감사관실 소관

O 2006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6.3%가 증가한 2억 2,100만원으로 예산액의 95.0%인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5.0%인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 ㅂ 예산현액 지출		이월액 C			불용액	B/A	D/A
T	A	В	계	명시	사고	D	D/ A	DIA
2006년	221	210	0	0	0	11	95.0	5.0
2005년	175	158	0	0	0	17	90.3	9.7
증감율	26.3	32.9				△35.3	-	-

○ 불용액 1,100만원은 집행잔액 1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 집행사 유 미발생 300만워임

#### 불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 발 생	사 업 계 획 변경·취소	예산절감	기 타
11	1	3	-	7	-
(100.0)	(9.1)	(27.3)		(63.6)	

O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이 없으며, 불용비율은 5.0%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 음.

# < 감사관실 >

# 예산액 대비 2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발 생 사 유
감사관실	사이버청렴백일장 시상	2,800	2,800		선거법개정에 따라 시상품 제공이 불가능하여 미집행

# 3. 자치행정국 소관

O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6.1%가 증가한 3,053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의 97.6%인 2,980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2.0%인 60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C	기월액 (		불용액	B/A	D/A
기 판	A	В	계	명시	사고	D	D/ A	D/A
2006년	305,311	298,057	1,238		1,238	6,016	97.6	2.0
2005년	263,010	260,508	1,395	1,395	0	1,107	99.0	0.4
증감율	16.1	14.4				443.4		

O 세출예산 전용은 1건 4,512천원임.

###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항, 세항	목	세건적	감액	증액	/Γ TΓ
계	1건		4,512	4,512	
내무행정	일시사역 인부임	67,113		4,512	여권발급수요증가로
자치행정	국외여비	6,000	4,512		일시사역 증가

O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건 12억 3,8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 월되었음.

#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이월금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2건)	1,238	
대체재산 매입비 (별관부지 및 건물)	1,097	매입재산 인수시기 지연 (06.11.30 변경계약 체결)
위령사업기본조사설계비	14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가로 용역기간 연장

○ 불용액 60억 1,600만원은 집행잔액 55억 7,800만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1억 6,0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6,700만원, 기타 1,100만원임.

#### 불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 발 생	사 업 계 획 변경ㆍ취소	예산절감	기 타
6,016	5,578	-	160	267	11
(100.0)	(92.7)	-	(2.7)	(4.4)	(0.2)

O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7,500만원이며 이중 7,347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2.04%인 1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지출사유는 하이닉스 불법시위로 인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울타리 파손 긴급복구임.

####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C/A	지출사유
총무관리	10,000	8,470	1,530	15.3	하이닉스 하청노조원 서관옥상 점거농성 안전시설물 설치
청사관리	65,000	65,000	0		하이닉스 불법시위 울타리 파손 긴급복구

○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전용액이 0.001%인 **451**만원

- 이월액이 0.405%인 12억 3,800만원

- 불용액이 1.970%인 60억 1,6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0.025%인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73억 3,400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음.

# < 자치행정국 >

# 예산액 대비 20%이상 불용액 발생시업 현황

(단위: 천원)

					<u>(</u> 년위 : 선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	발 생 사 유
총무과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POOL)	70,000	68,230	97	선거법 개정에 따른 미집행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900	72,732	30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문 인식시스템 일부축소 설치 및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9,000	2,850	32	예산절감 및 대형행사 등으로 횟수 감소
"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265,000	109,154	41	교육인원 감소 및 교육기간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576,000	112,841	20	자녀1인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자치행정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0,023,216	4,393,003	44	지방선거결과 보전비용 잔액 발생
"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30,000	30,000	100	서관 사무실 배정 계획 변경에 의거 공간 부족으로 도민 다목적 회의실 미설치에 따른 불용액 발생
"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사례 발표 시상	9,900	8,250	83	시상금 지급 계획 변경으로 잔액 발생
주민생활지 원과	여권업무관련업체 워크숍 참석자 보상	5,000	5,000	100	당시 여권법 개정 예정으로 개정이 될 때를 대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여권법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워크숍 미개최로 불용액 발생(현재 여권법 입법예고 중)
"	도정홍보관 자원봉사 근무보상	9,150	9,150	100	도정홍보관 미설치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
회계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80,000	80,000	100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 1. 결산개요

# 가.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 н	예산현액	징 수	수납액	비율	(%)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초과
구분	A	결정액 B	С	C/A	C/B	В-С	결존액 D	초과 세입 E
2006년	286,276	281,123	281,123	98.2	100.0	0	0	△5,153
2005년	321,651	321,803	321,803	100.1	100.0	0	0	152
증감액	△35,375	△40,680	△40,680	_	-	-	-	△5,305

# 나.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b>→</b> 14	ા ો ને નો તો	지출원인	지출역	액	불용액
구 분	예산현액	행위액	금액	비율(%)	(징여금)
2006년	286,276	139,922	139,922	48.9	146,354
2005년	321,651	152,874	152,874	47.5	168,777
증감액	△35,375	△12,952	△12,952	-	△ 22,423

# 다. 자금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익		지 출	차 기
	전기이월액	수 입	계	시 포	이월액
2006년	168,929	112,194	281,123	139,922	141,201
2005년	213,854	107,949	321,803	152,874	168,929
증감액	△44,925	4,245	△40,680	△12,952	△27,728

# 라.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당 기 (2005년)	전 기 (2004년)	증 감	비고
경상이익	1,758	△851	2,609	
영업이익	△4,420	△7,201	2,781	
영업수익	6,716	5,572	1,144	융자금이자수입
영업비용	11,136	12,773	△1,637	지급이자 등
영업외이익	6,178	6,350	△172	
영업외수익	6,178	6,350	△172	예금이자수입
영업외비용	0	0	0	
특별이익	176	94	82	채무면제이익
당기순이익	1,934	△757	2,691	

주) 채무면제이익 : 채무소멸(상환기간 도래)로 발생한 부채감소액

# 마. 자산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 )] ~ ~II		부 채		자 본			
	사산종계 	소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소계	자본금	잉여금	
2006년	434,136	375,957	73,370	302,587	58,179	0	58,179	
2005년	411,214	354,969	69,605	285,364	56,245	0	56,245	
증감	22,922	20,988	3,765	17,223	1,934	0	1,934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62억 7,600 만원이며 수납액은 2,811억 2,300만원으로 98.2%의 수납실적을 나타 냄에 따라 51억 5,300만원이 감액 징수되었음.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48.9%인 1,399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1,463억 5,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과소세입을 차감한 1,412억 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실적은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증가와 2002년부터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율 하향조정(2001년까지 연6%, 2002년~2003년 연 4%, 2004년이후연 2.5%)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19억 3,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 기금융자금 현황

(단위:백만원)

2005년말 현재액	2006년 융자액	2006년 회수액	2006년말 현재액		
235,962	74,400	21,613	288,749		

○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자금 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사장되고 있으므로 조성된 기금이 설치목 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요구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1. 결산개요

# 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H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초과 기의
구 분	A	설성액 B	С	C/A	C/B	В-С	결존액   D	초과 세입 E=C-A
합 계	14,407	16,310	13,712	95.2	84.1	2,598	0	△695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	212	212	70.7	100.0	0	0	△88
순 세 계 잉 여 금	11,707	11,707	11,707	100.0	100.0	0	0	0
일 반 부 담 금	2,400	4,391	1,793	74.7	40.8	2,598	0	△608

# 나.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7 H	예산현액	지출액	٥	]월액 (	7	집행잔액	D / A	D/A	
구 분	A	В	계	명시	사고	D=B-A	B/A	D/A	
합 계	14,407	25	0	0	0	14,382	0.2	99.8	
징수교부금	72	0	0	0	0	72	0.0	100.0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0	0	0	0	0	0	0.0	0.0	
과오납금등	14,335	25	0	0	0	14,310	0.2	99.8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1.1%가 감소한 144억 700만원으로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13.2%에 해당하는 163억 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4.1%에 해당하는 137억 1,200만원이 수 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15.9%에 해당하는 25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 산 구 분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초과 세입	
구 분	현 액 A	결성액   B	С	C/A	C/B	В-С	결존액   D	제입 E=C-A
2006년	14,407	16,310	13,712	95.2	84.1	2,598	0	△695
2005년	18,259	20,382	18,243	99.9	89.5	2,139	0	△16
증감율	△21.1	△20.0	△24.8	△4.7	△5.4	21.5	0	-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0.2%인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3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구 .	3	예산현액	지출액	٥	]월액	C	집행잔액	D/A	D/A
T 1	_	A	В	계	명시	사고	D=B-A	B/A	D/A
2006 ર	<u> </u>	14,407	25	0	0	0	14,382	0.2	99.8
2005 เ	<u> </u>	18,259	6,536	0	0	0	11,723	35.8	64.2
증감율	<u>.</u>	△21.1	△99.6	0	0	0	22.7	-	-

-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 액 대비 수납율이 40.8%로 극히 저조한 바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액이 전년도 65억 3,600만원에 비해 2006년도에는 2,500만원이 지출되었음.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징수교부금에 있어 전년도에는 1억원이 지출되었으나 2006년에는 예산액 7,2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학교용지부담금

# □ 설치목적

-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 O 대규모 개발지역안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김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1995.12.29) 제정 시행.

# □ 부과기준

- O 공동주택 = 분양가격 × 1000분의 4
- O 단독주택 = 분양가격 × 1000분의 7

# □ 참고사항

- O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1995.12.29) 제정
- O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2005.3.31)
  - 부담금을 개인(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
- O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
  - 법령명칭 개정 및 부담금 납부자를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
- O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 중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의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확급에 대비하여 교육청 전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

# 결산개요

# 가.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7 H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율	(%)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초과 기의
구 분	A	설성액   B	С	C/A	C/B	В-С	결존액   D	초과 세입 E=C-A
합계	4,375	4,412	4,412	100.8	100.0	0	0	37
공공예금 이자수입	78	37	37	47.4	100.0	0	0	△41
순 세 계 잉 여 금	1,897	1,897	1,897	100.0	100.0	0	0	0
일 반 부 담 금	2,400	2,478	2,478	103.3	100.0	0	0	78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 나.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C			집행잔액	B/A	D/A
구 분	A	В	계	명시	사고	D=B-A	D/ A	
합계	4,375	700	0	0	0	3,675	16.0	84.0
기타부담금	960	650	0	0	0	310	67.7	32.3
예 비 비	3,343	0	0	0	0	3,343	-	100.0
징수교부금	72	50	0	0	0	22	69.4	30.6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3%가 감소한 43억 7,500만원으로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00.8%에 해당하는 44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이 징수되었음.

#### 세입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 H 원			장 수 수납액		비율 (%)		불 납 결손액	초과 세입
구 분	현 액 A	결성액   B	С	C/A	C/B	В-С	결손액   D	세입 E=C-A
2006년	4,375	4,412	4,412	100.8	100.0	0	0	37
2005년	4,479	2,734	2,734	61.0	100.0	0	0	△1,745
증감율	△2.3	61.4	61.4	-	-	0	0	-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16.0%인 7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_ н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C			집행잔액	D/A	D/4
구 분	A	В	계	명시	사고	D=B-A	B/A	D/A
2006년	4,375	700	0	0	0	3,675	16.0	84.0
2005년	4,479	837	0	0	0	3,642	18.7	81.3
증감율	△2.3	△16.4	0	0	0	0.9	-	-

○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과목이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3개과목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47.4%의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76%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함.

#### [참고자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7.1.19>)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7.1.19>
  -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7.1.19>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공제액
  -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m²당 표준건축비 × 부과 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②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 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 다.
  -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 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 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07.1.19>
  -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 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 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

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사업비
  -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 ③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 지방채상화기금

#### 1. 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기그머	전년도말	당	당해연도말		
기금명	현 재 액	계	수납액	지출액	현 재 액
지 방 채 상환기금	523	9	9	0	532

### 2. 검토의견

- 2005년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1종 1,751억 1,174만원의 기금을 운 용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으로는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 호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소관의 지방채상환기금이 있 음.
-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2,300만원에서 당 년도 이자발생액 9백만원이 수납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5억 3,200만 워이며 지출액은 없음
  - ※ 기금 5억원은 2004년 9월에 조성되었음
-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 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시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액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 아이 필요함.

#### [참고자료 1]

# 자치단체별 지방채현황

(단위:억원)

시도별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증감	비고
합	계	174,480	174,351	△129	
서	울	10,121	9,189	△932	
부	산	19,255	20,372	1,117	
대	구	23,529	17,345	△6,184	
인	천	11,787	13,020	1,233	
광	주	9,105	9,129	24	
대	전	6,320	5,797	△523	
울	산	5,738	5,937	199	
경	기	30,434	31,786	1,352	
 강	원	9,322	9,747	425	
 き	북	3,399	3,546	147	
 き	남	6,127	5,521	△606	
 전	북	7,072	7,474	402	
 전	남	6,013	6,506	493	
 경	북	10,064	10,639	575	
경	남	9,669	11,878	2,209	
제	주	6,525	6,465	△60	

주) 본 자료는 행정자치부 자료로 시군구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며, 2005년도 결산과는 차이가 있음.

# [참고자료 2]

# 지방자치단체 한도액현황

(단위: 억원)

7	н	한 도 액		7	н	한 도 액	
	분	2006	2007	孑	七	2006	2007
	총 계	14,202	14,425		총 계	2,849	2,976
서울시	본 청	10,371	10,951	강원도	본 청	825	848
	기초계	3,831	3,474		기초계	2,024	2,128
	총 계	1,775	1,835		총 계	2,201	2,619
부산시	본 청	836	912	충북도	본 청	675	768
	기초계	939	923		기초계	1,526	1,851
	총 계	1,130	1,244		총 계	3,372	3,813
대구시	본 청	481	543	충남도	본 청	1,113	1,055
	기초계	649	701		기초계	2,259	2,758
	총 계	2,678	2,986	전북도	총 계	2,600	3,182
인천시	본 청	1,884	2,185		본 청	734	743
	기초계	794	801		기초계	1,866	2,439
	총 계	694	932	전남도	총 계	3,633	4,209
광주시	본 청	330	586		본 청	918	857
	기초계	364	346		기초계	2,715	3,352
	총 계	720	730	경북도	총 계	4,107	4,983
대전시	본 청	308	335		본 청	1,108	1,254
	기초계	412	395		기초계	2,999	3,729
	총 계	815	889		총 계	4,379	5,033
울산시	본 청	409	447	경남도	본 청	1,384	1,544
	기초계	406	442		기초계	2,995	3,489
	총 계	12,607	13,060		총 계	887	1,087
경기도	본 청	5,458	5,461	제주도	본 청	476	443
	기초계	7,149	7,599		기초계	411	644

<sup>※ &#</sup>x27;06년 5조 8,649억원, '07년 6조 4,003억원으로 5,354억원 증가(재원증가 등)